

『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른』

## 2015년 인권교육 추진계획

### 〈추진배경〉

- ◆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 (인권교육)
  - 시장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.
- ◆ 서울시 인권담당관-11755호(2015.11.16) : 교육결과 제출 요청(12.18한)

### □ 서울시 인권교육 추진계획 (2015.4월)

- 기간 : '15.4월 ~ 12월 (30회, 2시간/회당)
- 방법 : 토의·강의식 강좌 (사례중심, 질의·응답 등 병행)
  - ※ 공사·출연기관 별 인재개발원 인권교육 과정 개설 협조

### □ 추진개요 (2015년)

- 대상 및 기간 : 공사 전 직원 / '15.11.25 ~ 12.15 (3주)
- 방법 : 부서별 자체 집합교육 시행 (토의·강의식, 2시간)
- 내용 : 장애인차별 해소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(교육자료 : 별첨)
- 장소 : 각 부서별 실정에 맞는 교육장소 및 교육 진행

#### ▶ 2014년 인권교육 추진실적

- 기간 : 2014.11~12월, 10회 (2시간/회차별)
- 방법 : 인권 전문강사 순회교육 (강사 서울시 지원)
- 내용 : 인권개념 이해 및 기관별 업무특성을 반영한 사례위주 교육

### □ 행정사항

- 소속별 교육결과 보고 : 2015.12.16(수)까지
- 2016년부터 인재개발원 인권교육과정 개설 추진
  - 신규자 및 신입관리자 교육 등 집합교육 프로그램 개설